

제 1613 호
1991.11.26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이 해 원
편집인: 공 보 관 이 상 진
전 화: 731-8111~3
인 쇄: 한국컴퓨터산업(인쇄)주식회사
전 화: 273-8111~3

시 보

차 레

- 공 문 시 행
문물관리전환소요조치 2
- 규 칙
제 2442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2
- 시의회예규
제 7 호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2

(이편계속)

공											
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“일하는 사회, 건강한 사회를 건설합니다”

4561

공 문 시 행

물품관리전환소요조치

1. 우리 대공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
역마차에 대하여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
1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소요를 조치

하오나 필요한 부서에서는 91.12.5까지 관
리전환 요청하기 바람(500-7132)
2. 위 기일까지 관리전환 요청이 없을 시는
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.

1991. 11. 25
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

가. 관리전환 소요조치 품목

물품분류 번호	품명	규격	수량	금액 (천원)	제작사	제원일	회계	상태
3920-002	역마차	2인승용	1	2,489	하림디자인 산업연구소	86. 7.15	일반	폐품
"	"	"	"	2,581	"	86.11.17	"	"
"	"	12인승용	"	3,211	"	86. 7.29	"	"
"	"	"	"	2,843	"	86.12.20	"	"
"	"	"	"	"	"	"	"	"
"	"	"	"	"	"	"	"	"
"	"	2인승용	"	2,581	"	86.11.17	"	"
"	"	"	"	"	"	"	"	"
"	"	"	"	"	"	"	"	"
"	"	"	"	"	"	"	"	"

규 칙

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
포한다.

1991. 11. .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

●서울특별시규칙제2442호

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87조제1항제2호 중 “자동차관리사업
소(지소를 포함한다)” 다음에 “위생처리장,
하수처리장, 쓰레기처리장”을 추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
3월 21일부터 적용한다.

시 의 회 예 규

●서울특별시의회예규제7호

서울특별시의회청원준법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,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청원서의 제출) ①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의 소개의견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

제3조(청구서의 보완요구 등) ①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한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청원인이 특히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(불수리사항의 통지) 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재판에 간섭하는 것
2.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
3. 동일기관에 2회 이상 또는 2개 기간 이상에 제출된 것 중 후에 접수된 것

제5조(이의신청) ①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청원의 심사, 처리) 소관 상임위원회

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다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청원인 등 진술)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,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력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"에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제척과 회피)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·의결하게 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.

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9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.

1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
2.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·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

〈별지 제2호서식〉			
청원철회요구서			
청원권명			
청원인	주소		
	성명	② 주민등록번호	
소개의원	인		
청원제출일자		청원철회일자	
철회요구사유			